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36
----------	-------

발의연월일 : 2026. 8. 27.

발 의 자 : 유용원 · 강승규 · 김미애
김성원 · 이현승 · 성일중
나경원 · 이진숙 · 김희정
고동진 · 김소희 · 박정하
박대출 · 곽규택 · 유상범
김예지 · 이달희 · 한지아
김상훈 · 윤영석 · 최보윤
김 건 · 강명구 · 주호영
유의동 · 임종득 · 김은혜
김재섭 · 한동훈 · 서지영
김기현 의원(31인)

제안이유

최근 국가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해양에서의 군사적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장기간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의 획득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핵추진잠수함사업은 잠수함의 연구개발·건설 및 운용뿐만 아니라 핵추진잠수함원자로와 핵연료의 안전관리, 핵물질의 비확산 및 물리적 방호, 방사능재난 대응,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등 다양

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국가 전략적 핵심 국책사업임. 그러나 현행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률은 군사용 핵추진체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핵무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적인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한다는 원칙 아래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핵추진잠수함사업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자주국방에 기반한 국가안전보장과 방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전략적 핵심사업인 핵추진잠수함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주국방에 기반한 국가안전보장과 방위산업의 발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핵추진잠수함사업은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적인 핵무기의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며,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의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대통령 소속으로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를 두어 사업의 기본계획, 획득·운영, 안전관리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핵추진잠수함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획득을 위하여 사업타당성조사, 연구개발, 원가 산정, 시험평가, 계약, 장납기 자재의 사전 조달 및 세출예산 이월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안 제8조).
- 마. 핵추진잠수함시설 설치지역의 지정·변경·해제 및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설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경우 관계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바. 핵추진잠수함원자로와 안전관계설비 및 핵연료가공시설의 설치·운영·해체 등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사. 핵추진잠수함원자로 및 안전관계설비의 설계, 핵물질의 계량관리 규정, 운반용기의 수입 및 사용 등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 아. 국방부장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고,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4조).
- 자.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안 제26조).
- 차.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 및 핵연료 물질 등에 관한 안전관리, 안전조치 및 수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

기 위하여 관련 대학·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및 제37조).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전략적 핵심사업인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국방 기반의 국가안전보장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평화의 유지와 방위산업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핵추진잠수함”이란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사용하는 군사용 잠수함을 말한다.
2. “핵추진잠수함시설”이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운용·정비·보급 및 관리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핵추진잠수함원자로”란 핵추진잠수함의 운용에 필요한 에너지 생산 또는 그 기술적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로를 말한다.
4.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란 핵추진잠수함원자로 내 핵분열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에너지로서 핵추진잠수함의 추진 및 운용에 필요한 동력 및 전력을 말한다.

5.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이란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의 연구개발, 생산, 이용 등을 말한다.
6. “설치지역”이란 제10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핵추진잠수함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말한다.
7. “핵추진잠수함사업”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 가. 핵추진잠수함시설의 설치, 이전 및 변경 등에 관한 사업
 - 나. 핵추진잠수함 및 관련 전력화지원요소의 획득 및 운영 사업
 - 다.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 및 핵추진잠수함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 라. 핵추진잠수함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산업(이하 “핵추진잠수함산업”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과 관련된 사업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안전관계설비”란 핵추진잠수함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농축도가 100분의 20 미만인 물질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핵추진잠수함용 핵연료가공시설”이란 핵연료물질을 물리적·화

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핵추진잠수함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11.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란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은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핵물질의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등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준수할 것
3. 핵추진잠수함원자로 및 방사성물질의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방사선장해로부터 국민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
4.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을 반영하여 핵추진잠수함원자력에 관한 안전 기준을 설정할 것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자주국방 기반의 국가안전보장, 방위

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및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핵추진잠수함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확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핵추진잠수함사업의 국가안보상 중대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술 및 정보의 보호와 유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핵추진잠수함사업의 기반조성 및 추진과 핵추진잠수함원자력 안전관리를 분리하여 각각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핵추진잠수함사업에 참여하는 국가기관과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은 방사성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핵추진잠수함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은 핵추진잠수함사업을 위한 연구개발·건설 및 운용·관리와 관련한 국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안보와 보안을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⑦ 핵추진잠수함사업에 참여하는 국가기관과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은

안보 및 보안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핵물질 및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중 핵추진잠수함의 획득, 인가·허가등의 의제, 승인 및 검사의 절차, 자격증명 등 특례로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핵추진잠수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방위사업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손해배상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률을 따른다.

제2장 핵추진잠수함사업 기반조성 및 추진 등

제1절 핵추진잠수함사업의 기본계획 등

제6조(핵추진잠수함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사업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핵추진잠수함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 등이 있으면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추진 목적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핵추진잠수함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핵추진잠수함의 연구개발·건조에 관한 사항
4. 핵추진잠수함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설치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핵추진잠수함의 운용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7.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핵추진잠수함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확충에 관한 사항
9. 핵추진잠수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0.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재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핵추진잠수함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방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3년마다 핵추진잠수함사업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에 관한 사항
3. 핵추진잠수함시설 설치·이전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설치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핵추진잠수함과 관련 전력화지원요소의 획득에 관한 사항
6. 핵추진잠수함 운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7. 핵추진잠수함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핵추진잠수함사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핵추진잠수함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0. 핵추진잠수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1. 핵추진잠수함 전문인력 양성 및 확충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략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2. 합동참모의장 및 해군참모총장

3.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전략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위원회의 심의로 볼 수 있다.

1.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획득·운영분과위원회

2.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분과위원회

⑤ 전략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대통령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마다 전략위원회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전략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존속 여부의 결정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전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핵추진잠수함사업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추진

제8조(획득에 관한 특례 등) ①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14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사업을 사업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신속하고 원활한 핵추진잠수함 획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핵추진잠수함사업과 관련하여 방위사업계약(국외 구매를 위한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핵추진잠수함원자로 설치 등 핵추진잠수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가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의 안전성 확보 및 신속한 획득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의 시험평가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핵추진잠수함사업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서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
2. 핵추진잠수함원자력 관련 핵물질 확보가 지연된 경우
3. 핵추진잠수함 관련 국제협상이 지연된 경우
4. 설치지역 지정이 지연된 경우
5. 핵추진잠수함원자력 안전관리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핵추진잠수함의 건조 일정상 핵추진잠수함사업계약의 체결 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자재 및 핵심부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제조·가공에 착수하게 하거나 이를 미리 구매할 수 있다.

⑦ 방위사업청장은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원가 절감과 공급망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 계속비 또는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인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약을 체결하거나 둘 이상의 회계연도에 필요한 자재 및 부품을 경제적 주문량에 따라 일괄하여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⑧ 국가는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세출예산으로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개발성과물의 활용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 소유의 개발성과물을 핵추진잠수함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공개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은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성과물의 국가 소유 기준, 정보의 공개 또는 활용 대상·범위·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기준·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핵추진잠수함시설 설치지역의 지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핵추진잠수함시설의 설치지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지역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핵추진잠수함의 운용·정비 및 보급에 필요한 지리적·해양적 조건
2.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방호의 확보 가능성
3. 물리적 방호 및 보안의 확보 가능성
4. 주민의 생활환경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설치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설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인가·허가등의 의제) ① 국방부장관이 핵추진잠수함시설에 관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핵추진잠수함시설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심의·협의·신고·해제·결정·동의 및 계획의 수립·변경 등(이하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해당 법령에서 정한 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의 계획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 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협의
7.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절대보전 무인도서에서의 행위 협의
10.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임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8.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 등의 허가
19.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20.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

의 승인

2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3.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신고·협의
 2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
는 신고
 2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9.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로표지 설치 허가 및 제13조
에 따른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관리 허가
- ② 국방부장관이 핵추진잠수함시설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
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
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 핵추진잠수함원자력 안전관리

제1절 핵추진잠수함원자력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제12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의 안전관리(이하 “안전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10년마다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의 안전관리 및 물리적 방호에 관한 사항
4.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핵추진잠수함 관련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6. 소요재원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7조에 따른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방부장관은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안전관리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시행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군참모총장에게 통보한다.

② 국방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3년마다 부문별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문별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문별 안전관리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부문별 안전관리시행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4조(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을 하려는 자는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핵추진잠수함원자로 및 안전관계설비의 설치
2. 핵추진잠수함원자로 및 안전관계설비의 운영
3. 핵추진잠수함원자로 및 안전관계설비의 해체
4. 핵추진잠수함용 핵연료가공시설의 설치
5. 핵추진잠수함용 핵연료가공시설의 운영
6. 핵추진잠수함용 핵연료가공시설의 해체
7. 제23조에 따른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의 정지 후 재가동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승인신청서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청자가 해당 승인 대상에 관하여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인가 또는 신고 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인가 또는 신고 등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허가·

인가 또는 신고의 효력은 그 승인을 받은 때에 즉시 상실된다.

④ 신청자는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의 신속한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승인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핵추진잠수함원자로 및 안전관계설비의 설치와 운영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핵연료가공시설의 설치와 운영

⑤ 신청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승인을 심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에 필요한 기술수준을 충족할 것

2.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의 위치, 구조 및 설비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으로 인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내용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⑦ 신청자가 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해당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전검토의 결과를 해당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⑧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승인(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이하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 및 제16조에 따른 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검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및 부속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6조제1항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제35조에 따른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및 제36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핵추진잠수함 및 핵추진잠수함시설에 출입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하는 사람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그 명단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승인·변경승인·신고·검사 및 사전검토의 기준·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표준설계승인) ① 핵추진잠수함원자로 및 안전관계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설계로 반복적으로 설치하려는 자는 그 설계(이하 “표준설계”라 한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표준설계기술서와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은 제14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표준설계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면 표준설계승인을 받은 자에게 승인받은 사항의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6조(계량관리규정의 승인) ①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을 정하여 핵물질의 사용개시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핵물질의 계량 대상, 계량 기준점 및 측정 방법
2.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의 단계별 핵물질 총량 및 구성의 보고 체계
3. 핵물질의 물리적 검증 방법 및 절차
4. 핵연료물질의 확보·운반·사용·저장 및 처분 전 단계에 대한 검증 방법
5. 군사기밀의 보호와 국제기구에 의한 검증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의 계량관리규정이 핵물질을 적정하게 계량·관리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이에 대한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

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운반용기 등 설계승인) ①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이하 “운반용기”라 한다)를 제작하려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시설에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이하 “저장용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운반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승인의 취소)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승인받은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을 중단한 때
 3. 제14조제5항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4. 제14조제6항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14조제9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6.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때
 7.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때
 8. 제35조의 승인조건을 위반한 때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승인을 받

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승인받은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을 중단한 때
3. 제14조제5항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4. 제14조제6항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14조제9항·제19조제2항·제23조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6. 제21조·제25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때
7. 제35조의 승인조건을 위반한 때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때
2.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3. 제15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승인 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주기적 안전성평가) 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원자로의 운영 승인(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원자로 및 안전관계설비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 또는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기록 및 비치)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는 핵추진잠수함원자력 이용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그 사업장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1조(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의 안전관리준칙 작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이하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이라 한다)는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원

자력 안전관리준칙(이하 “안전관리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
2.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로부터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
3.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와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② 안전관리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핵연료물질과 방사성물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사항
2.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의 안전한 설치, 운영 또는 폐기 등을 위한 사항
3.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 관련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에 대한 물리적 방호 및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핵추진잠수함원자력 방사능비상 및 방사능재난 대비 체계 및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관리준칙을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의 안전성 및 종사자 등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준칙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은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준칙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은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은 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설의 안전성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제출 및 보완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이 법에서 정하는 각종 핵추진잠수함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핵추진잠수함원자력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 또는 부적합사항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의 사용정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의 성능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에게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의 사용정지, 개조, 수리, 이전, 운영방법의 지정 또는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의 사용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등) ① 국방부장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핵추진잠수함시설의 주변지역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역의 설정 기준은 핵추진잠수함원자로의 열출력, 정박 중 운전 조건 및 격납 구조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기준의 설정 근거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구역에 대하여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은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 및

핵물질에 대한 물리적 방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 재난의 예방·대비·대응에 관하여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준용한다.

제25조(신고 등) ①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는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승인을 받은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폐지하거나 중단한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을 재개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에 따른 사용정지로 중단하였다가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재가동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해당 시설 밖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해당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핵추진잠수함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 입항시키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은 그가 소지하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하여 도난·분실·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

실을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방사성물질등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원자력손해배상) ①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따른 원자력사업자로 보아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따른 배상조치 의무 및 배상책임의 한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국가는 손해의 전액을 배상한다.

③ 국가는 외국의 항만에서 핵추진잠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해당 국가와 필요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배상의 청구·결정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① 누구든지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을 해양 또는 지하 등에 무단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은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처분
2.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방사성 폐기물의 인도 방법·절차 및 관리비용에 관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하며, “방사성 폐기물 발생자”는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으로 본다.

④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책무를 부담한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등) ① 핵추진잠수함용 사용후핵연료는 국

가가 관리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저장·운반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기본계획에 핵추진잠수함용 사용후핵연료의 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저장시설의 확보 방안과 소요 재원을 포함한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핵추진잠수함원자로의 운영을 개시한 회계연도부터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범위·절차, 제3항에 따른 적립의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핵추진잠수함용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절 자격증명

제29조(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 분야에 대한 자격증명) ① 핵추진잠수함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방사선의 취급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핵추진잠수함

원자력이용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나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핵추진잠수함원자로조종감독자
2. 핵추진잠수함원자로조종사
3. 핵추진잠수함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4. 핵추진잠수함핵연료물질취급자
5. 핵추진잠수함방사선취급감독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의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핵추진잠수함원자로 및 안전관계설비의 건설 및 개수·보수 또는

그 재료·부품 등의 납품·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제130조·제132조 및 제133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의 지시·감독하에 핵연료물질을 취급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대여 등 금지)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9조제4항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명서(이하 “자격증명서”라 한다)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격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2항이나 제3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자격증명의 취소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자격증명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증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을 취득한 경우
2. 제2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30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때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핵추진잠수함원자력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등) ①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들은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핵추진잠수함원자력 안전관리 및 방사선장해방지
2.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의 물리적 방호
3. 핵추진잠수함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방사능방재

②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 및 제36조에 따른 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사자에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핵추진잠수함사업 관련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에 따라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종사자의 방사선 방호) ① 핵추진잠수함원자로가 설치된 핵추진잠수함에 승조하는 사람과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에 종사하는 사람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본다.

②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선량한도를 준수하도록 하고, 피폭방사선량을 측정·기록하며,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은 방사선비상이 발생하여 인명 구조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등은 국방부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구조자에 대하여 건강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들은 제2항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의 기록을 측정·기록한 날부터 3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측정·기록 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였던 사람의 건강 영향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절 보고 및 감독 등

제34조(보고 및 검사)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들에 대하여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자들의 사무실·사업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하거나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이 법과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가입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국제법”이라 한다)를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국제법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자 또는 국제규제물자 공급 당사국 정부가 지정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의 감독하에 국제법으로 정한 범위에서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사업소·공장·선박·연구시설 및 부지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④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의 감독하에 국제법으로 정한 범위에서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봉인을 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거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검사, 감시 또는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5조(승인 또는 지정 조건) ①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지정에는 안전성 확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건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승인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핵추진잠수함원자력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핵추

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 및 핵연료물질 등에 관한 안전관리, 안전조치 및 수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립·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문기관의 설립·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37조(전문인력 양성 및 확충)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핵추진잠수함 연구개발·건조·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수요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3. 전문인력 수급 지원
4. 해외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
5. 국내 전문인력의 관련 국제기구, 국외연구소 등에 대한 파견 지원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핵추진잠수함 연구개발

및 운영·관리 등과 관련한 대학·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핵추진잠수함산업 기반의 조성 등)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은 핵추진잠수함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핵추진잠수함의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2.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
3. 핵추진잠수함 및 핵추진잠수함원자력 관련 전문기업 육성
4. 핵추진잠수함 관련 공급망 안정화 및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 지원
5. 그 밖에 핵추진잠수함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국제협력 등의 촉진) ① 국방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협력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사업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에 관한 안전조치, 핵연료물질의 공급, 원자로 기술의 이전 및 안전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등에 따라 핵물질의 안전조치 적용이 면제되는 범위 및 기간에 관하여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0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다만, 제3장에 따른 핵추진잠수함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비밀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핵추진잠수함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군인, 공무원, 군무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2. 제7조에 따른 전략위원회 · 분과위원회 · 핵추진잠수함사업단의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자

3. 제36조에 따른 전문기관,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 방산업체 · 일반업체 ·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의 대표,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4. 제36조에 따른 전문기관,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 방산업체 · 일반업체 ·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에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 · 운영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5. 핵추진잠수함사업의 계약상대자, 하도급자 및 하도급자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의 대표,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제42조(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에 따른 전략위원회 · 분과위원회 · 핵추진잠수함사업단의 위원

2. 제36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4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

제4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44조(벌칙) ①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를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핵추진잠수함의 원활한 운용을 방해한 사람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권한을 남용하여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설비를 조작·사용 또는 변경하거나 방사성물질 등을 취급·유출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재산·환경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죄를 저질러 사람에게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전쟁·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1년 이하의 금고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제4항(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45조(벌칙) 제41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並科)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을 한 사람
2. 제14조제9항 전문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사람
3. 제18조에 따른 핵추진잠수함원자력사업의 정지명령 또는 핵추진잠수함원자력이용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사람

4. 제2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
2.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
3. 제17조제5항 ·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사람
4. 제17조제6항 · 제19조제1항 · 제21조제1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 · 제27조 ·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5.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6.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2항의 자격증명을 취득한 사람
8.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9항 후문 · 제15조제4항 · 제16조제2항 · 제19조제2항 · 제21조제3항 후문 · 제25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2.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

3. 제32조를 위반한 사람

4. 제35조의 승인 또는 지정조건을 위반한 사람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 또는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5항 단서,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단서 또는 제17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2. 제20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3.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1. 제1항제1호·제2호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2. 제1항제3호의 경우: 국방부장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략위원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핵추진잠수함사업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제7조에 따른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이전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핵추진잠수함 관련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핵추진잠수함사업으로 본다.